

구조혁신에 따른 교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06.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전공, 학과, 학부, 계열, 단과대학 등의 모집단위(이하 ‘학과’라 한다)가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학과의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통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가 1개 학과로 신설되거나 통합하는 학과 중 어느 한 학과로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② ‘모집중지’란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표(「학칙」 제3조 및 별표1)에서 모집단위가 삭제되어 입학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③ ‘모집중지일’이란 학과의 신입생 입학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해당 학년도 학기 개시일을 말한다.

④ ‘폐과’라 함은 학과 편제정원이 전 학년 0명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⑤ ‘폐과기준일’이라 함은 해당 연도 학과의 편제정원이 전 학년 0명이 되는 학기의 종료일을 말한다.

⑥ ‘폐과교원’이라 함은 ‘폐과’ 또는 ‘모집중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임교원(비정년계열 교원 포함)을 말한다.

⑦ ‘소속변경’이라 함은 폐과교원의 소속 학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⑧ ‘전공변경’이라 함은 폐과교원이 재교육을 통해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의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잔존학과’라 함은 모집중지된 학과로서 모집중지일부터 폐과기준일까지 존속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4조(소속변경심의위원회) ① 폐과교원의 소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무연구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단과대학의 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전공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추천하는 교내·외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폐과교원이 희망하는 학과의 교원 및 학생 수, 교육과정 편성 및 강의담당 시수, 전공 관련성, 교과목에 대한 강의 능력, 협조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⑥ 위원회는 희망하는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하는 학과 교원의 소속변경) 통합하는 각 학과의 소속 교원은 통합된 학과의 교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통합된 학과로의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른다.

제6조(폐과교원의 소속변경) ①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제1호 및 제2호는 제7조를 적용하고, 제3호는 제8조를 적용한다. 다만, 폐과교원이 소속 학과에 잔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한다.

1. FIND칼리지로 소속변경
2. 희망하는 학과로 소속변경하거나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신설학과로 소속변경
3.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제7조의 소속변경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만 해당)

제7조(폐과교원의 소속변경 절차) 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1개 학과만 신청할 수 있다.

② 교무연구처장은 모집중지일 전 6개월 이내에 폐과교원에게 모집이 중지되는 사실과 제11조의 의원면직에 따른 인사제도, 소속변경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폐과교원이 소속변경을 원할 경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변경신청서 [별지 서식-1]를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무연구처장은 폐과교원이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FIND칼리지 학장의 의견서(제6조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별지 서식-2] 또는 해당 학과의 의견서(제6조 제2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별지 서식-3]를 제출받아 전공변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전공변경심의위원회는 해당 의견서를 참고하여 소속변경의 적격 여부를 평정하여[별지 서식-5] 전공변경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공변경 대상자는 평균 평점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⑤ 교무연구처장은 제4항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교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무연구처장에게 재심의 청구[별지 서식-6]를 할 수 있다.

⑦ 교무연구처장은 재심의 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소속변경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재심의 심사기준은 제4항의 평정기준[별지 서식-6]을 적용한다. 재심의 결과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무연구처장이 해당 교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⑧ 소속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교원은 폐과되는 학과에 잔존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 절차) ① 제7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서 탈락한 교원 또는 제7조 제7항에 따라 재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교원은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폐과교원은 전공변경 선정에서 탈락 결정 또는 재심의 기각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취득 계획서와 전공변경 신청서[별지 서식-4]를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육을 통해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의 교과목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교육비를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공 교과목의 개발 기한은 모집중지일부터 1년 이내에 타 대학 석·박사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야 하고, 모집중지일부터 3년 이내에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도 석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수료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재교육을 통해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였을 경우 증빙서류(학위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교과목 개발계획서)와 소속변경 신청서[별지 서식-1]를 늦어도 다음 학기 개시(3월1일, 9월1일)하기 30일 전까지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속변경은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교무연구처장은 제4항의 소속변경 신청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재교육을 완료했음에도 소속을 변경할 학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FIND칼리지로의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잔존학과에 소속되며, 그 기간 동안 책임시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 제1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의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폐과교원의 잔존학과 소속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모집중지된 소속 학과(전공)에 잔존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잔존기간은 모집중지일부터 폐과기준일까지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소속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소속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을 위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과정 등록기한을 초과하거나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 기한을 초과한 폐과교원.

② 잔존기간 동안 해당 교원은 책임시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집중지된 학과에 잔존하는 폐과교원은 폐과기준일 6개월 전에는 언제든지 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변경절차는 제7조 제3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폐과교원이 제3항의 소속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심의에서 탈락한 경우 폐과기준일 다음 날에 해당 교원의 소속을 FIND칼리지로 변경한다.

제10조(잔존학과 소속 교원의 책무) 잔존학과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학과에 소속된 교원은 폐과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잔존학과 재학생의 전과를 방해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폐과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폐과교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인사) 의원면직하는 폐과교원은 「명예교수규정」 또는 「객원교수 임용규정」에 따라 명예교수나 객원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책임시수 준수) 폐과되는 학과에 잔존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는 교원은 책임시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제외)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통합 또는 폐과되는 학

과에 소속된 교원의 소속변경이 구조혁신 과정에서 결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속변경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절차에서 소속변경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소속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속학과를 정한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속변경 신청서

현소속	대학,	학과	직급		성명	
변경학과	○○○대학, ○○학과					
변경시기	20○○학년도 ○학기					
변경사유						
소지 학위	학위	취득대학	전공	비고※		
	학사					
	석사					
	박사					

상기 본인은 구조혁신에 따른 폐과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소속변경에 대한 추가 의견서 1부(자유양식)

※ 첨부할 추가 의견서에는 희망하는 학과나 FIND칼리지의 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 강의 가능 과목, 신설할 교과목 등이 기술될 것을 권장

※ 비고란은 변경을 희망하는 학과와 전공 일치여부를 ‘일치’, ‘유사전공’, ‘불일치’ 로 기재

※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의견서

신청교원	소속 학과	직급	성명
항목(배점)		점수	비고(의견)
전공 일치도 (15점)		15점(일치) 7점(유사전공) 0점(불일치)	※전공일치도 및 해당 교수의 전공과 학과발전의 연계성, 전공불일치 시 학위취득계획 등을 반영하여 평정
변경 학과 기존교원과 전공 및 교과목 중복 여부 (15점)		책임시수 확보 정도에 따라 0점~15점	※ 책임시수 충족 가능여부, 분반 여부, 신설 교과목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합계점수 (30점)			
종합의견			

구조혁신에 따른 폐과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전체 소속 교원이 합의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교원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학과장 : (인 또는 서명)

학 장 : (인 또는 서명)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재교육을 통한 전공변경 신청서

현소속	대학,	학과	직급		성명	
변경학과	○○대학, ○○학과					
변경시기	20○○학년도 ○학기					
변경사유						
소지 학위	학위	취득대학	전공	비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취득 계획	학위종류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수료), <input type="checkbox"/> 박사				
	학위취득(예정)대학					
	소재지					
	전공					
	수학기간	20 . . . ~ 20 . . . (0년)				

구조혁신에 따른 폐과교원 등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재교육을 통한 전공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